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6월 5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한시기구(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래비전추진단 폐지(안 제2조, 안 제3조)

○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부서 이관 및 신설(안 제5조, 안 제6조)

- 미래교육과 이관: 미래비전추진단 → 행정국

- 비전협력과 폐지로 인한 관련 업무: 총무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로 이동

- 지방소득세과 신설

- 명칭변경: 부과과 → 재산세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폐지 결정에 따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행정국)는 현행 미래비전추진단에 속해 있는 “미래교육과”를 행정국에 두는 부서로 추가하고, 미래비전추진단의 비전협력과에서 담당해 오고 있는 “대외교류”와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및 미래교육과에서 담당해 오고 있는 “교육정책,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과학육성,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이 담당하는 업무로 이관함.
 - 안 제6조(기획재정국)는 기획재정국에 두는 부서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고, 현행의 “부과과”를 “재산세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기획재정국에서 담당하는 현행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재산세, 법인 세무조사” 및 “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신설함(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또한, 현행의 행정국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회협력 및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및 미래비전추진단의 비전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금융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해 옴.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폐지 결정에 따라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방소득세과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의 미래비전추진단에 속해 있는 미래교육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비전협력과를 폐지하는 대신, 기획재정국에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여 집행기관에 두는 부서의 총 수는 증감 없이 현행대로 유지함.
 -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4 호
----------	---------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한시기구(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비전추진단 폐지(안 제2조, 안 제3조)

나.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부서 이관, 분과 및 신설(안 제5조, 안 제6조)

- 미래교육과 이관: 미래비전추진단 → 행정국

- 분과 및 신설: 부과과 → 재산세(명칭변경), 지방소득세과(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단의 설치)”를 “(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회협력, 법제심사”를 “대외교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정책, 문화재”로, “관광진흥”을 “관광진흥, 의료특구”로 한다.

4. 교육정책,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과학육성,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부과과”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개발, 주민소통”을 “개발”로, “통계”를 “통계, 의회협력, 법제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국제금융지구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년지원”을 “청년정책·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 부과”를 “재산세, 법인 세무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비전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국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u>국장·단장</u>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국·단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u>미래비전추진단</u>,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을 둔다.</p> <p>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u>자치행정과</u>,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p> <p>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u>의회협력</u>, <u>법제심사</u>에 관한 사항</p> <p>2.·3. (생략)</p> <p><u><신 설></u></p>	<p>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등) ① ----- ----- <u>국장</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의 <u>설치</u>) ----- ----- <u>복지국</u> ----- -----.</p> <p>제5조(행정국) ① ----- <u>자</u> <u>치행정과</u>, ----- <u>미래교육과</u> -----.</p> <p>② ----- -.</p> <p>1. ----- ----- <u>대외교류</u> ----- -----</p> <p>2.·3. (현행과 같음)</p> <p>4. <u>교육정책</u>, <u>학교지원</u>, <u>도서관</u> <u>운영</u>, <u>과학육성</u>, <u>평생교육</u>,</p>

4.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 개발, 주민소통,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반려동물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4.·5. (생략)

6.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정책, 문화재 -----
- 관광진흥, 의료특구-----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기획재정국) ① -----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② -----
-----.

1. ----- 개발-----
통계, 의회협력, 법제심사-----

2. -----
---- 반려동물,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

3. -----
-- 청년정책·지원-----

4.·5. (현행과 같음)

6. 재산세, 법인 세무조사-----

7. 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제7조(미래비전추진단) ① 미래
비전추진단에 비전협력과, 미
래교육과를 둔다.

② 미래비전추진단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대외교류, 국제금융지구 활
성화,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과학육성,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
항

사항

<삭 제>